



1 우전중학교 대응 조치 · 안내 사항

- ① 등교 시, 급식 전, 수시 발열체크 통한 코로나19 의심증상자 확인
- ② 개학(3.2.)이후, 방역활동도우미(4인) 배치로 교내 일일방역소독 철저 시행
- ③ 가정에서도 하교 후 노래방,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및 소모임 금지 또는 자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④ 등교 전 자가진단 꼭 실시하도록 하고, 손씻기 등 건강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2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관련 Q&A [전라북도청]

Q1.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는 무엇을 말하나요?

A.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함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를 금지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유흥종사자는 5명의 범위에 포함

Q2.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A. 5명부터의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가족·지인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4명까지의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임

○ 다음의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

㉠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이 모이는 경우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결혼식 및 장례식

- 개별 결혼식·장례식은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4㎡당 1명

㉢ 행사, 각종 시험

▲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시위,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워크숍 등

▲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다만,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 높은 활동 동반하는 학술행사, 집회·시위,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는 수도권 외 지역(1.5단계)에서도 10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⑤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예)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하는 경우

- 집합금지 대상 시설은 아니나, 종목의 특성상 5인 이상 모일 수 밖에 없는 스포츠의 경우 사실상 운영이 어려웠던 시설에 대하여 예외적용
- 다만, 경기 전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여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Q3.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요?

A. 돌봄, 임종 등을 위하여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직계가족이 아닌 지인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함

Q4.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전국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최대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하게 됨

* (예) 서울 거주자가 타 지역에 가서 모임을 하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

Q5. 모임인원을 산정할 때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하나요?

A. 모임인원 기준에 연령제한은 없으므로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

Q6.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감염병 관련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의4호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Q7. 식당 또는 가정 내에서 가족 간의 식사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A. 직계가족*의 경우, 예외적용을 함에 따라, 4명이 넘어도 식사모임이 가능한 하나,

* 직계가족은 직계존비속을 뜻함

- 다수가 모이고 식사 등 마스크를 벗는 활동(행위)이 있는 모임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있음을 유념하여야 하며,
- 모이는 시간은 짧게, 입과 코를 가리고 마스크는 올바르게 마스크를 착용하며, 마스크를 벗는 활동(식사하기, 노래하기 등) 등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Q8. 가족과 지인이 함께 식사하는 경우도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나요?

A. 지인이 같이 식사할 경우는 가족 및 지인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 4명까지만 가능함

Q9. 등본 상 동거인을 가족으로 볼 수 있나요?

A. 등본상 동거인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동일 거주공간에 있는 가족으로 판단되어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님

Q10. 회사 안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5명 이상 함께 하는 것은 가능한지?

A. 식사는 마스크를 지속 착용할 수 없어, 감염확산의 위험이 있는 활동이므로, 직원들 간의 점심식사라고 하더라도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 식당이 아닌, 사무실 내에서도 식사하는 경우에도 4명 이하의 인원이 한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Q11.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A.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Q12. 일반 학원의 경우도 강의실 내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A. 학원의 경우 친목 형성을 위한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님

Q13. 스터디그룹의 경우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A. 스터디그룹의 경우에도 조치가 적용되어, 4명까지만 허용됨

2021. 3. 17.

전주우전중학교장